# 危險處理 15個條

Risk는 豫防, 豫知해도 實現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Risk가 實現된 때에는 그 對處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對處方法은 豫知－X－對處Type(A형), X－X－對處Type(B형), 豫知－豫防－對處Type(C형)의 3가지가 있다.

A형은 豫知하고 있으나 豫防이 곤란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 B형은 豫知도 豫防도 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경우, C형은 豫知, 豫防을 모두 하고 있어도 不可抗力 내지 豫防을 하지 못하여 Risk가 實現되어 버린 경우이다.

문제는 예방의 내용에 따라 Risk가 실현된 때의 對處方案, 對處時間, 損失規模가 다르다는 것이다.

豫防이 0의 경우에는 對處量이 커지게 되고, 豫防이 충분하면 對處量이 적어진다.

결국, 예방의 Cost가 많이 들면 대처의 Cost가 적게 되고, 예방의 Cost가 적게 들면 대처의 Cost가 많이 들게 된다.

Risk의 對處는 Risk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Scene을 어떻게 빨리 효과적으로 消滅시킬 것인가가 第1의 課題가 된다.

손실의 규모가 확대되기 전에 짧은 시간 내에 판단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점차 Risk 感性訓練이 필요하게 된다.

**제1조 : 배짱으로 決定한다.**

Risk가 실현되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 보고 후회해도 의미가 없다.

실현된 Risk는 실현되기 전의 Risk로 되돌아 갈 수가 없으므로 빠른 단계에서 실현된 Risk에 正面에서 대응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잔꾀를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Risk가 실현되며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잡음, 잡념이 생기므로 Risk 對處에 대해서 최초에 결정한 마음을 최후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제2조 : 事實確認을 한다.**

Risk가 실현된 때에는 우선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되, 사실 중에 자신의 희망사항이나 생각을 넣어서는 안된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사랑스러우므로 사실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事實歪曲을 하기 쉬운 것이다.

事實確認은 가급적 제3자의 뒷받침이 있으면 더욱 좋다. 사실에는 現場事實과 臨床事實이 있다. 현장사실은 인간의 눈으로 확인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임상사실은 Risk가 실현한 후에 실험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며 이것도 반드시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제3조 : 어디에 連絡을 하면 좋은가를 決定한다.**

화재시나 긴급시에는 연락망을 준비하여 두면 신속하게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때에 상대와 늘 연락되는 것은 아니다. 不在時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指示를 받아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문제가 될 때에는 특히 곤란하다. 예를 들어 단순한 사고 정보의 유무를 연락하는 것이라 해도 100명 중에서 1명만 연락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제되지 못한다.

긴급시의 연락은 連絡漏落, 相對方의 不在, 連絡內容의 미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system을 생각해야 한다.

**제4조 : Panic이 일어나지 않도록 情報傳達을 한다.**

Risk가 실현되면 누구라도 당황하기 때문에 위협하는 정보전달이나 事實輕視의 정보 전달의 양 측면에도 주의해야 한다.

지나치게 Risk의 긴박감을 전하면 인간은 사고능력을 잃어 Risk의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또한, Risk를 가볍게 보고 感覺無視情報를 傳하면 안심이 지나쳐 행동을 신속하게 취하지 않는다.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더욱이 안심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정보전달 방법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Risk의 진행 상황에 따라 위험정보 전달의 방법도 당연히 바뀌어 간다.

**제5조 : 原因分析은 1分 以內에 한다.**

Risk가 실현되어 있으므로 장시간에 걸쳐 原因分析을 할 수 없다. 순간적으로 원인분석이 되도록 Risk 分析能力을 길러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Risk라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원인이 상당히 풀리지 않을 때에는 예상원인(즉, 가설원인)을 세워서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에 대해서 천천히 원인분석을 하고 대처하여서는 손실규모를 크게 한다. 그러나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對處한다 해도 위험을 소멸시키는 데에는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손실규모도 확대되는 根源이 된다.

**제6조 : 불씨 制御가 勝敗를 決定한다.**

Risk가 일어나는 원인에는 根本原因과 枝葉原因이 있다. 근본원인 결국, 火原의 制御를 하면 전부가 해결된다. 제일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위험제어에는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목조이므로 화재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본래의 원인은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의 危險感性이 없기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근본원인(직접원인)은 위험감성의 결여이며, 지엽원인(간접원인)은 목조건물이라 할 수 있다.

**제7조 : 救出은 強者부터 한다.**

救出만큼 어려운 일은 없다. 모든 사람을 구하고 싶고 누구라도 구하고 싶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放置해야 할 경우도 있다. 구출은 弱者부터 행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강자부터 행하는 편이 많은 사람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극히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10인승 보트에 11명을 태우면 全滅, 1명을 放置하면 10명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심술궂은 질문이 있다.

救出에 多數決 原理가 작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해답은 強者는 1명씩 바다속에서 헤엄치게 하면서 보트를 저어 구조를 기다린다.

**제8조 : 先制攻擊이 Risk를 적게 한다.**

實現된 Risk에 먼 앞일까지 생각하여 대응하다 보면 점점 손실규모가 확대한다.

Risk가 크게 되기 전에 先制攻擊을 한다.

Risk의 진행상황에 맞추면 되돌아 오는 Risk가 크게 된다.

**제9조 : 災害防止를 考慮한다.**

Risk가 實現된 때에 제일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일시적으로 收拾되었다고 생각한 Risk가 다른 형태로 다시 실현되는 것이 많다. 하나의 Risk를 제어해도 그 속의 Risk가 일어나는 것이 많다. 재해구조대가 사고를 당하거나 천연가스 폭발이 메탄가스 폭발을 유도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다.

**제10조 : Risk Impact分析을 短時間에 한다.**

Risk가 실현된 때에 그 Risk의 影響經路, 影響範圍, 波及効果 등의 Impact分析을 짧은 시간내에 행

하는 것이다. 사고가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분석 등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Risk Impact 分析을 하여 두면, 확실한 危險消滅策이 발견되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교훈이 생긴다.

Risk Impact는 Risk사이의 波及効果分析에 유용한 기법이다.

**제11조 : 提携活動을 重要視한다.**

Risk가 실현된 때에 중요한 점은 각 部署와의 提携活動이다. 제휴활동이 잘 행해지지 않으면 Risk 消滅에 시간이 걸리고 손실규모를 크게 한다.

제휴활동은 야구에서나 배구에서도 평상시의 훈련을 말한다. 평소의 Risk 提携活動을 행하는 것이 Risk 실현을 효과적으로 줄여간다.

연 1회의 화재예방 훈련에 의한 제휴활동으로 정작 중대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매월 Risk 제휴활동을 하는 것은 경비가 지나치게 든다. 그 때야 말로 Risk 제휴활동의 Personal Computer Software를 개발하여 책상위에서 제휴활동의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2조 : 매스컴 對策은 迅速하고 體系的으로 한다.**

최근 큰 기업에서는 弘報課를 두고 對 社會的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사고에 관한 보도나 정보제공은 인명이 결부되어 있는 때에는 인명존중의 관점에서 매스컴 보도를 삼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부서에서의 협력 의뢰는 신속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매스컴 대책으로 실패하는 경우는 지나치게 신중하여 정보전달이 늦어져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公表할 때마다 회사의 자세가 一貫되지 못해 비난을 받는 것이다.

**제13조 : Risk 對處에 Speed를 붙이자.**

實現된 Risk의 對處는 Speed를 갖고 해결하는 것이다. 사고가 실현되어 그것이 소멸할 때까지 인간은 緊張狀態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Speedy하게 처리하는 것이 나중에 책임 문제에도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준다.

**제14조 : 被害者와의 對應은 眞心으로 接近한다.**

우선 피해자에게 最高責任者가 謝罪한다. 報償金을 생각하기 전에 진심으로 접근한다.

그것이 나중의 배상 해결시에 도움이 된다.

**제15조 : 災害現場에서의 盜難을 防止한다.**

Risk가 實現되면 현장은 혼란상태가 되므로 그 곳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온다.

약탈, 폭동은 재해현장에 자주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장보호를 위한 Security Man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 로스엔젤러스에서 발생한 인종 차별적 재판판결에 대한 폭동은 사회정의의 문제가 結付되어 있으므로 폭동현장에서의 수퍼마켙 약탈사건이 발생하기 쉽다.

葬禮式場에서 金品을 훔치는 것도 현장의 混亂에 便乘한 경우이다.

# 화재는 한순간 후회는 한평생